

Tax News Flash

May 2020



Providers of Offshore E-Commerce Transactions Now Subject to 10% VAT

재무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재무부 규정 No. 48/PMK.03/2020 ("PMK-48")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세지역 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세지역 내로 무형의 과세재화나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5월 12일에 의회에서 비준된 정부령 1호에서 규정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ITO는 이 부가세를 징수할 의무를 역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과했습니다.

Items subject to VAT and its collection under PMK-48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취득, 이용할 때, 부가세 납부대상이 되는 무형의 과세재화나 과세용역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a. 문학, 예술,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신안권, 도면, 공식이나 비밀공정, 상표권, 지적/산업재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 b.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장비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 c. 학술적, 기술적, 산업적, 상업적지식 또는 정보의 이용:
- d. 아래의 형태로 상기의 a., b., c.와 관련하여 추가적 또는 보충적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 1. 대중에게 위성, 케이블, 광섬유 또는 유사한 기술을 통해 배포되는 영상이나 음성 또는 영상, 음성을 모두 수신 또는 수신할 권리;
 - 2. 위성, 케이블, 광섬유 또는 유사한 기술을 통해 방송/ 송출되는 TV/라디오용 영상이나 음성, 또는 영상, 음성을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 3. 라디오 통신 스펙트럼의 전부/일부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 e. 영화필름, TV방송용 필름/비디오, 라디오방송용 음성테이프을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 f. 지적/산업재산권 및 상기 언급된 유사한 권리의 이용/ 양도와 관련 해당 권리의 전부/일부를 취득

무형의 과세재화나 과세용역의 이용은 디지털재화나 디지털용역의 이용을 포함합니다.

Appointment of VAT collectors

부가세징수의무자로 지정되는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ITO가 규정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인도네시아 내 관련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와의 거래가액이 12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초과;
- 2. 트래픽 또는 사이트방문자 수가 12개월 동안 일정한 수를 초과

아래의 경우에 관련 재화구매자 또는 용역이용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구지주소가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트 등에 등록할 때, 선택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인 경우;
- 결제가 인도네시아 기관이 제공하는 지불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해당 거래가 인도네시아의 IP나 전화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징수의무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ITO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TIN("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부여받으며 지정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그 지정이 유효합니다.

Payment and reporting obligations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청구서(billing), 주문영수증(order receipt)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부가세액과 그 지급이 기재된 문서는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의한 부가세징수증이 되며, ITO는 이를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서류로 판단합니다.

징수된 부가세는 해당 과세기간(월)의 다음달 말까지 세무서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부가세징수의무자는 매 분기의 마지막달까지 분기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월별로인도네시아 내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의 수, 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의 부가세징수의무자에 대한 지급액/부가세징수액 및 부가세징수의무자의 부가세납부액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ITO는 매년 연단위로재화구매자/용역이용자의 이름과 TIN 등을 포함하는보고서도 징구할 계획입니다.

ITO는 관련된 부가세의 신고를 위하여 별도의 application이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PMG Notes:

- ITO는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본인이 부가세로 인하여 ITO에 등록을 해야하는 지 여부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기 규정을 뒷받침하는 세부규정을 발표해야할 것 입니다.
- 현재는 PMK-48에 따라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언제 통보받을 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 부가세징수의무자(ITO가 아직 미발표한, 1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내 거래가액과 트래픽, 사이트방문자 수 등)로의 지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아직 미공개되었기 때문에, 초반에 PMK-48의 준수 및 이행은 역외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협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ITO는 타정부부처 및 기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 등과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먼저 PMK-48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에 따른 대금청구 및 징수, 납부, 보고서 작성 등에 적합하게 그들의 회계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작성일 현재, ITO가 당장 규정의 발효일까지 PMK-48의 준수 및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역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 10%의 부가세 및 관련된 프로세스, 세무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을 위해 현재 사업모델의 변경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역외의 법인이 부가세의 직접대상이 되고, 부가세징수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에 없던 인도네시아 과세의 새로운 개념으로, 향후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ontact us

KPMG Advisory Indonesia

Tax Services

33rd Floor, Wisma GKBI 28, Jl. Jend. Sudirman Jakarta 10210, Indonesia **T:** +62 (0) 21 570 4888 **F:** +62 (0) 21 570 5888

Abraham Pierre

Partner In Charge, Tax Services Abraham. Pierre@kpmg.co.id

Susanto

Head of Clients and Markets Susanto@kpmg.co.id

Jae Young Lee Korean Business Desk Jaeyoung.Lee@kpmg.co.id

home.kpmg/i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Advisory Indonesia, an Indonesian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